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중소벤처기업부장관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개정에 의해 폐지 예정인 ‘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’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·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

3. 주요내용

가. ‘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’ 폐지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, 구성·운영 등 관련 규정 삭제

1)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심의사항(제3조), 구성·운영(제4조), 위원 지명 철회 및 해촉 규정(제4조의2) 삭제

2)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수립·시행 시,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심의 근거 삭제 및 자구 수정(제11조 제2항, 제7항)

나.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·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기준 신설(안 제24조, 별표4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표

2) 입법예고 추진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제2항제1호 중 “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9조제2항제5호”를 “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 제2조제2호마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9조제2항제4호”를 “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 제2조제2호라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3조(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) 법 제6조제2항제4호에</u> <u>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</u> <u>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 <u>말한다.</u> 1. <u>법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중</u> <u>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</u> <u>종합 · 조정</u> 2. <u>제11조제5항에 따른 시행지</u> <u>침의 작성 및 변경</u>	<삭 제>
<u>제4조(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</u> <u>성 · 운영 등) ① 법 제6조제3항</u> <u>에 따른 정부위원은 다음 각 호</u> <u>의 사람으로 한다.</u> 1.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산업통</u> <u>상자원부, 방위사업청의 국장</u> <u>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</u> <u>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</u> <u>람 각 1명</u> 2. <u>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국장급</u> <u>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</u> <u>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</u> <u>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</u> <u>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(이하</u>	<삭 제>

“기술혁신추진위원회”라 한다)
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
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
할 수 있다.

③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
장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
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
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
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
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
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다만,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
러하지 아니하다.

⑤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
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
결한다.

⑥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사무
처리를 위하여 기술혁신추진위
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
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
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추진위
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

사항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
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
한다.

제4조의2(위원의 지명철회·해임
및 해촉) ① 제4조제1항제1호에
따라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
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
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
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
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
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
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
밝히는 경우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
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혁신
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

<삭 제>

있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 6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축(解囑)할 수 있다.

제11조(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
· 시행 등) ① (생 략)

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 개발예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예산으로 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의 경우: 「과학 기술기본법」 제9조제2항제5 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예산

2. 공공기관의 경우: 「과학기술 기본법」 제9조제2항제4호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」 제40조에 따라 각 기관 이 예산 편성에 반영한 연구 개발사업의 예산

③ ~ ⑥ (생 략)

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 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1조(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
· 시행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 「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법」 제2조 제2호마목-----

2. ----- 「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법」 제2조제2호 라목 -----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⑧ 삭 제 ⑨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⑨ (현행과 같음) <u>제24조(과태료 부과기준) 법 제33</u> <u>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</u> <u>기준은 별표 4와 같다.</u>
---	---

[붙임] 과태료 부과기준(별표 4) 제정안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가.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다.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리.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,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
법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33조제1항	100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742